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130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 고 1. 유한회사 A
2. B
3. C
4. 유한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신현일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050,442원 및 그 중 125,237,039원에 대하여는 2019. 12. 18.부터, 122,915,295원에 대하여는 2020. 2. 10.부터 각 2020. 9. 4.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유한회사 A과 피고 유한회사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유한회사 D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 피고 유한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제3의 가.항 및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7.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피고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은행(광양 지점) 및 F(울촌산단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 체결일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변경)
1	2016. 10. 21.	G	E은행	2017. 10. 20. (2019. 12. 6.)	135,000,000원 (127,500,000원)
2	2016. 10. 31.	H	F	2021. 10. 29.	165,000,000원

2)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A을 위하여 위 표 기재 각 약정 체결일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연 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4) 피고 A은 2019. 8. 30. F에 대하여 원금지급을 연체하였고, 2019. 10. 29. E은행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9. 12. 18. F에 대출원금 및 이자 125,237,039원을, 2020. 2. 10. E은행에 대출원금 및 이자 122,915,29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한 보전비용으로 595,428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 302,680원(= 위 표 순번 1 기재 보증약정에 관한 위약금 172,560원 + 위 표 순번 2 기재 보증약정에 관한 위약금 130,12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A은 2019. 7. 3.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는 2019. 8.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 A과 피고 D의 부동산 매매

피고 A은 2019. 8. 21.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9. 8. 27.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 C는 위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한 공동담보의 가액인 4,3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피고 C가 2019.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9. 8. 27. 이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그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이를 유지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3.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248,152,334원(= 125,237,039원 + 122,915,295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채권 595,428원 및 위약금 채권 302,680원이 각 발생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050,442원(= 248,152,334원 + 595,428원 + 302,680원) 및 그 중 125,237,039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12. 18.부터, 122,915,29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2.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2020. 9.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8. 30. 피고 A이 F에 대한 원금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A은 자동차 1대(시가불상)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9. 11. 28.경 158,200,000원이었던 사실, 같은 시기에 피고 A이 원고에 대해 채무 292,5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158,2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292,5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 A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피고 A 소유의 자동차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이 자동차의 가액은 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인 134,300,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수익자의 악의에 관하여

1) 피고 D의 항변

피고 D의 대표이사인 I은 피고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 A에 운영자금을 빌려주었고, 이후 I은

피고 D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 A은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피고 D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피고 D는 위 부동산을 이전받을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D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I이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 D에 양도하였다거나 이를 피고 A에 통지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 D에 따르더라도 I은 2014. 8. 1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 A에 합계 149,7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I 또는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2019. 8. 21.까지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D는 피고 A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 D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I의 동생이 2016년경에 피고 A의 지입차량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피고의 2021. 2. 10.자 답변서 제5면), 피고 D의 대표이사인 I은 피고 A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15,200,000원이었던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58,200,000원이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로 인해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시점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인 158,200,000원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15,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한해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고, 원고도 위 가액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6)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43,000,000원(= 158,200,000원 - 115,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전라남도 광양시 []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

(1층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층 6층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층 1206.5㎡

2층 1336.24㎡

3층 602.31㎡

-

6층 602.31㎡

지하1층 1817.1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전라남도 광양시 [] 대 2184.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음식점(합식) 66.34㎡

(대지권의 표시)

1.소유권대지권 2184.9분의 39.49

